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위탁회계법인 선정 제안요청서**

---

2025. 7.

# I.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명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국고보조금사업 위탁회계법인 선정 공고

## 나. 추진목적

- 부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RISE사업”) 등 사업비 정산업무의 위탁을 통해 사업 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다.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제2항

###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0>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2017.10.31>

## 라. 적용범위

- 부산라이즈혁신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사업(부산 RISE 사업 등) 참여 대학 및 부산라이즈혁신원의 사업 운영비

## 마. 협약 및 과업기간

- 협약기간은 최종선정평가 이후 협약 체결일부터 '26년 5월까지이며, 추후 사업 추진 성과 및 필요성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 가능
- 과업기간은 협약 이후 '26년 5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 관련된 정산업무 완료시점까지 적용

## 바. 정산 수수료 및 사업규모

- 신청 회계법인이 회계 수수료 구간별 요율 제안 요청
  - '25년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은 약 1,800억원(추후 변동 가능) 내외이며, 정산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최대 0.1% 이내로 제안 요청
- ※ 대학별 '25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최저 약 5억 원부터 최고 약 200억 원까지 상이(다수의 회계법인 선정 시 균등 배분 고려)

## 사. 과업내용

-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집행 예방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월 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집행내역을 점검 후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조치 수행
  - 부적정 집행 및 증빙 미비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상위보조사업자 및 하위보조사업자에 컨설팅 및 안내 제공
  - 월 단위 모니터링 진행 시 집행 점검결과는 시스템 등록 후 매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부산라이즈혁신원에 제출
  - ※ 기점검 완료된 월별 사용 집행 부분도 위탁 회계법인의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 시 대학 현장방문 조사(또는 사업의 중간점검 등)에 동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
  - ※ '부산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각 대학 및 참여기관별 회계규정' 준수
- 사업비 정밀정산 및 적정성 검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RISE 관련 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 하위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밀정산

- 인건비, 용역비, 기자재 구매 등 항목별 회계·세무 처리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에 대해서는 불인정 금액 산출
- 정산보고서 제출 및 분쟁 또는 민원 대응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의 정밀정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정산 결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의무가 있으며, 사업비 정산 관련 이의신청 시 검토
- 정산 지원 및 부대업무
- 참여기관별 집행내역, 불인정 금액, 반환액 등의 정산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인 현황보고서를 제출
- 부산형 RISE 지침의 현행체계 진단 등 지침의 재·개정 컨설팅
  - ※ e-나라도움 항목 및 사업비 항목(비목·세목)을 매칭하여 별도 관리 필요
- 회계법인 전담인력(회계사 PM) 지정과 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문의에 대해 상시 자문 및 자료 제공을 수행하며,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 완수에 필요한 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문의는 이메일 및 전화상담으로 대응하며, 부산라이즈혁신원 누리집 Q&A 게시판에 등록되는 부산라이즈혁신원의 답변 검토 지원도 포함

### 아. 성과물

구분	내용	제출기한
월간 사업비 점검 보고서	· 사업비 모니터링 점검 보고서 및 부산라이즈혁신원 지정 파일 *관련 서식은 선정 회계법인과 추후 논의	매월
중간 점검보고서	· 사업의 중간평가에 대한 사업비 집행 등 관련 보고서 *중간 점검보고서는 사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 논의 예정	'25년 하반기
정산보고서	· 대학별 최종 회계정산보고서(정산검토보고서) 00부, 전자파일(USB)	'26년 상반기

### 자. 세부 추진 일정

<b>선정공고</b>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공고	'25.7.30.~8.12
↓		
<b>제안서 접수</b>	○ 제안서 접수(전자우편 제출)	'25.7.30.~8.12
↓		
<b>선정평가</b>	○ 제안서 평가(서면검토, 대면평가)	8월 중
↓		
<b>협약체결</b>	○ 협약체결 및 회계법인에서 정산업무 실시	8월 중

## II. 과업 준수 내용

### 가. 과업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불허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나. 기간변경

-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2)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위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공정보다 지연이 생길 때에는 지연 원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라 발생된 문제는 과업수행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다. 계약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를 요구할 수 없음
  -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가 지났음에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보안의무

- 최종보고서 및 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종료 시 모든 결과물과 각종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용역과정에서 사용된 정보는 모두 폐기(삭제)되어야 함

### Ⅲ.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가.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회계법인
    - 최근 1년 이내, 아래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 법인
    - e나라도움 사업 정산(사업비 대응 등) 및 회계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 ※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신청 자격제한 사항 >

-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 관련 기관에서 지정 회계법인으로 선정된 후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 된 회계법인

#### 나.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회계법인) 회계법인 0개
  - (선정절차) 1단계 서면서류 검토, 2단계 대면평가 실시
    - (1차 검토) 제출 서류 기반 서면 검토\*
    - \*신청 회계법인의 수에 따라 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차 평가) 제출 서류 기반과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 평가 운영
- ※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결과 고득점 회계법인을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
  - (협약체결) 최종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과 부산라이즈혁신원과 협약

#### 라.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5년 7월 30일(화) ~ 8월 12일(화), 10: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 제출처 : jcchoi@bistep.re.kr(평가관리본부 대학지원팀 최진철)

## 마.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해당시
①	- 제안서 : 20페이지 이내 세로 규격	○	
②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③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④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25.1.1. 이후 국내 신용평가기관 발급, 유효기간 이내분)	○	
⑤	- 회계법인 및 총괄책임자 징계 등 조치 사실 확인원 각 1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회기관 : '24.1.1.~'24.12.31.)	○	
⑥	- 실적증명서 (최근 5년 내, 국고보조금사업 위탁정산 참여실적 및 발주기관 확인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회기간 : '24.1.1.~'24.12.31.)		○

### ○ 문의처

- 평가관리본부 대학지원팀 최진철 연구원(051-795-5173)

## 바.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 및 협약체결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한글로 표기)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 '~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재단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